

기술진단전문기관

[] 등록신청서

[]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신청 (신고)인	상호(명칭)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	
신청(신고) 내용	사무실 소재지 (전화번호:)			
	실험실 소재지 (전화번호:)			
	등록/변경내용			

「하수도법」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(변경을 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(서명 또는 인)

○○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등록신청의 경우: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변경신고의 경우: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부등본 사본(법인의 경우) 2. 사업자 등록증 사본(개인의 경우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신청(신고)를 하여야 하는 대상
 -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을 신고하려는 자
2.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
 - 가. 상호 변경
 - 나. 기술인력의 변경
 - 다. 대표자의 변경
 - 라.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
 - 마.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(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합니다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